

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사업소 규정

제정 1980. 12. 31 규칙 제 545호

개정 1998. 6. 29 규칙 제1095호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보건대학원 학생의 현지 교육실습 및 교수의 현지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,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사업소(이하 사업소)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본 사업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한다.

1. 보건대학원 학생에게 지역사회 보건실습 기회의 제공
2. 교수들에게 지역사회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기회의 제공
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정책과 관련된 위탁교육, 정책자문 및 주민사업 실시
4. 기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및 주민사업 실시

제 3 조 (사업소의 대상지역) 본 사업소는 춘천과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한다.

제 4 조 (소장) ①사업소에 소장 1인을 두되,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소장은 보건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5 조(행정실) 사업소에 행정실을 두되, 행정실은 보안, 관인관수, 서무, 회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 6 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) 사업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7 조 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②위원은 본교 교직원 또는 지역사회 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8 조 (위원회의 위원장)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 9 조 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0 조 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 (제54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09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사업소 강의실 대관운영 규정

제정 2015. 04. 24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보건사업소의 강의실 대관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'대관'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보건사업소 내 공간의 사용을 승인 받아 강연, 회의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'대관자'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대관의 범위)

- ① 대관이 가능한 공간은 1층 대형 강의실(1층 도면 기준 사무실 2와 3)과 1층 소형 강의실(1층 도면 기준 사무실 1)이다.
시간은 공간별 대관안내 항목에서 별도로 공지한다.

제4조(대관료)

- 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보건사업소 공간별 대관료는 시설유지비, 감가상각비, 인건비 등 원가요인과 공익성 및 개방성 등 운영의 목적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.
- ③ 공간별 대관료는 '붙임1'과 같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사업소 공간별 대관료에 따른다.
- ④ 대관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지정한 계좌로 사용일 5일 이전까지 대관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.

제5조(대관신청)

- ① 대관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"대관기본계획서"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대관신청 이후부터 최종 승인 이전까지는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신청내용을 수정 할 수 있다.

제6조(대관승인 통보 등)

- 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신청인의 대관신청을 접수한 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내부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, 대관승인 여부를 대관자에게 통보한다.
- ②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대관승인 기준)

① 원칙적으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대관승인을 하며 행사 성격의 공익성 및 개방성, 타행사와 중복 및 간섭 여부, 공간 독점 방지 등을 감안하여 승인한다.

제8조(대관승인 거부)

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.

- ①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보건사업소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춘천보건사업소의 관리·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② 소음, 소란, 선동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상품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③ 다음과 같은 사례가 1회 이상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
 1.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경우
 2. 대관권한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대관승인 이후 행사진행에 있어 일방적 취소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

제9조(대관승인 취소)

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.

-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,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
- ② 대관승인 시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
- ③ 대관자가 대관 승인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
- ④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사업소 공간별 사용수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
제10조(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)

- ① 대관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보건사업소내에 현수막, 홍보 안내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지 않은 설치물과 장비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.
- ② 대관자는 대관 사용 종료 후, 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, 설치 및 철수로 인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보건사업소의 기존 시설물,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.
- ③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보건사업소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,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.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④ 대관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사전승인 없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사업소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.

제11조(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)

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 단,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후 공동주최, 주관, 후원 등 대관사용주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서울대학교

보건대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제12조(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)

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② 대관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사용으로 타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

2.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량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
③ 대관자가 ①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④ 대관자는 준비, 사용,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규정 미숙지 및 규정위반시의 책임)이 규정의 미숙지 및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.